

독일의 社會音樂敎育制度和 그 敎員養成制에 대한 考察

曹 效 任

(本學會 理事 : 서울敎育大學 助敎수)

目	次
I. 머리말	III. 國民音樂學校의 敎員養成制度
II. 독일의 社會音樂敎育制度	1. 머리말 : 職業觀
1. 國民音樂學校의 基本構想	2. 敎員養成制度의 歷史的 變遷
2. 敎育課程	3. 敎師敎育
3. 各 課程의 目標	IV. 맺음말

I. 머 리 말

현대 敎育을 家庭教育, 學校敎育, 社會敎育으로 대별해볼 때, 社會敎育은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와 기술 및 지식과 교양의 제공원과 훈련원으로서 각 분야에 따라 또는, 직업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능을 敎育하는데 그 目的이 있으며 거기서 그 價値의 根源을 찾아야 한다.

社會敎育法에 平生敎育이라는 개념이 설정되면서부터 私設講習所의 社會敎育機關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가고 있으며 音樂學園도 학교敎育이 소홀히하고 있는 音樂敎育을 보완해주는 역할은 물론, 우리나라 社會音樂敎育의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왔다.

우리나라의 音樂學園은 선진외국과 같이 국가의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이 없이 사회적 으로나 敎育적으로 불합리한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30여년동안 音樂文化發展에 기여해 왔다.

현재 전국에는 수많은 音樂學園이 있으나 그 규모나 敎育방침·敎원의 자질이 천차만별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수적 팽창은 과당경쟁을 불러 일으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인 위치는 영리만을 추구하는 상업기관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1980 년대에 들어와서 音樂學園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현대인의 교육적·문화적 요구의 증대와 소득수준·수명의 연장 등의 경제적·시간적 여유의 증대와 더불어 早期教育에 대한 깊은 관심이 音樂學園의 새로운 方向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音樂學園의 넓은 분포를 이용하여 平生教育으로서의 社會音樂教育을 實現한다면 그것으로 國民音樂教育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音樂學園이 사회음악교육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音樂教育者들과 政府機關이 이끌어 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社會音樂教育 專門指導者를 養成하고 資格을 인정하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平生教育을 염두에 두고 音樂專門家를 養成하기 위한 實技中心의 教育은 물론, 音樂敎養人의 養成과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學校敎育과 社會教育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音樂教育의 育成을 위하여 함께 공헌하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높은 音樂文化를 이룩한 獨逸의 社會音樂教育制度를 考察함으로써 현재의 우리나라의 현실의 개선점을 인식하여 음악교육의 목적의식의 재정립 및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먼저 사회음악교육기관으로서 독일의 民衆音樂教育의 선봉이 된 ‘國民音樂學校’¹⁾(Volks Musikschule)의 역사적인 발전과정과 제도적인 특성을 고찰하고 그 교육과정을 소개하며 교원양성제도와 교육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독일의 社會音樂教育制度

1. 國民音樂學校의 基本構想

현재 독일에서는 社會音樂教育이 學校音樂教育의 가치있는 補充으로서 市立 靑少年音樂學校(die Städtische Jugendmusikschule)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케스텐베르크(Leo Kestenberg, 1882 ~ 1962)²⁾의 教育理念을 ‘國民音樂學校’로서 실

註1) 이하 ‘音樂學校’라 한다.

2) 체코태생의 이스라엘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교육가로서 베를린 콘저보토리오의 교원양성과의 교수였으며 프로이센의 문교부 음악장학관으로 1918 ~ 1932년까지 봉직하면서 이 지방의 음악 교육체계를 세우는데 선봉적인 역할을 하여,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갖추게 하였다. 그는 ‘프로이센의 고등교육기관의 음악교원을 위한 시험과 양성, 그리고 임용’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또한 ‘사설음악강습’과 ‘프로이센의 학교음악교육’ 등의 법도 제정하였다.

현시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전해내려오는 콘저와토리움과 더불어 현대적인 사회경향으로서 一般民衆을 위한 音樂敎育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現狀은 많은 선구자들에 의하여 그 기초가 다듬어지고 국가나 사회의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꾸준히 발전해온 결실이다.

1900 년이래 音樂敎育的인 改革運動 (학교가창운동 : Schulgesang bewegung)이 예술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단편적으로 理論에 치중된 授業에 대하여 전개되었다.^{註3)}

그후 1920 년대에 들어와서 民衆이 音樂文化와 격리된 現狀을 지적하고 靑少年과 國民을 위한 音樂敎育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예테 (Frifz Jöde , 1887 ~ 1970) ⁴⁾는 이를 위한 音樂學校의 設置를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독일 민중음악교육의 모체가 된 音樂敎授所가 1925 년경부터 각 지방과 도시에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그후 이들이 오늘날의 市立 國民音樂學校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독일 音樂學校協會 (Verband deutscher Musikschulen e. U)의 音樂學校 構成案의 前文에 의하면 音樂學校는 어린이와 靑少年 그리고 成人을 위한 社會音樂敎育機關으로서 그 주된 任務는 음악적인 기초교육과 일반연주와 애호가연주, 재능발견과 영재육성 및 직업교육에 대비한 교육이다.

현재의 音樂學校의 基本構想은 1961 년에 초안된 案에 교육적이며 조직적인 골격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고 1969 년에 독일음악학교 협회를 거쳐서 의무적으로 공포되었다.

그에 따른 音樂學校의 敎育은 基礎課程 · 初級課程 · 中級課程 · 高級課程의 4개 敎育課程으로 구성되며, 각 課程과 科目에 따라서 集團指導 (學級指導와 分團指導)와 個別指導로 이루어진다.

그 첫번 敎育과정인 基礎課程은 양자택일할 수 있는 두 가지 音樂的 指導方法에 따라서 4~6세의 어린이를 위한 早期音樂敎育과 6~8세의 어린이를 위한 音樂基礎敎育으로 나누어지며 授業은 음악적인 동기촉진과 진전되는 기악수업과 성악수업에 대비한 준비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속되는 초급 · 중급 · 고급과정의 수업은 전공과목과 합주를 포함한 보충과목이 상호보완적으로 병행되어 진행되며, 각 교과과정의 수업목표와 내용은 포괄적인 지도안에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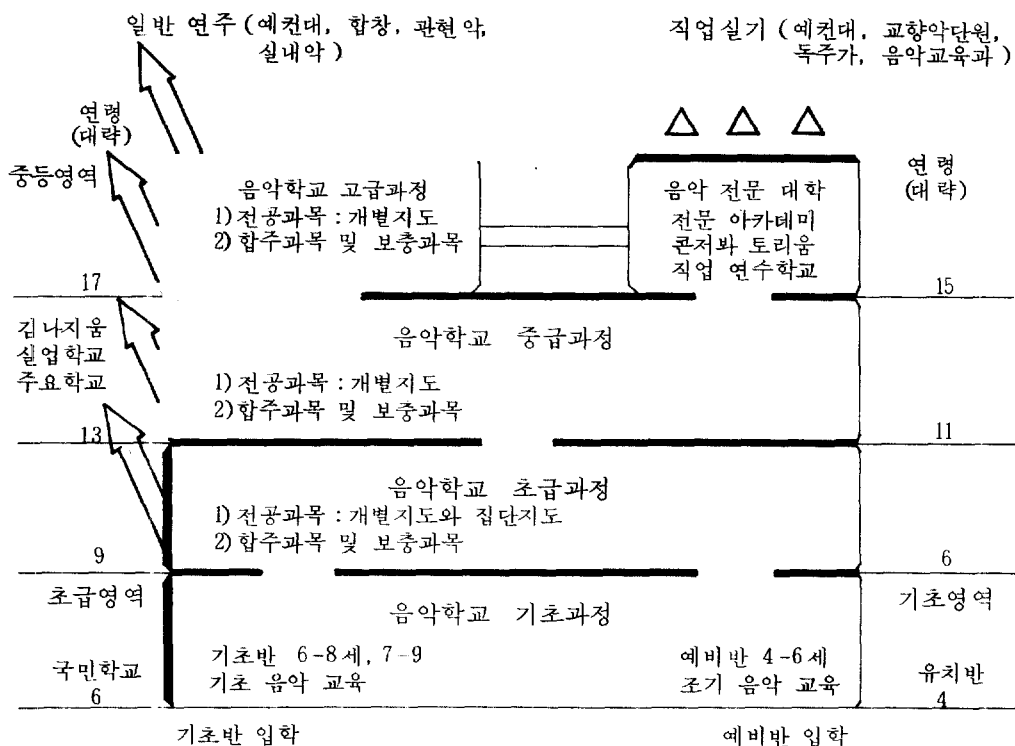
註3) 1904 년에 ‘음악교육학회’가 창설되었으며 1905 년에는 하노버에서 제 3 회 ‘예술교육의 날’이 ‘음악과 운동’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었다.

4) 독일의 靑少年音樂運動의 창시자로서 베를린에 있는 ‘교회와 학교음악을 위한 연구소’의 교수로 있으면서 민중음악교육을 주장한 W. Hensel 과 더불어 제 1 차 세계대전후의 독일음악교육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각 科目에 대한 指導案은 1969 년까지 발전되어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종합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여 修正되었으며, 다시 보완되어 1979 년에 최종적인 案이 音樂學校에 提出되었다.

음악학교에서의 수년간의 지속적인 授業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敎育課程에서 同一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進級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시행되는 시험과 중급과 고급과정으로 전이해가는 과정의 중간시험에서는 學生의 能力에 대한 상태를 學校가 學生과 父母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밖에 기초과정으로의 월반 즉, 기악수업부터 이수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예비지식과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각 課程에서의 年齡制限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연령제한은 초과할 수도 있으며 또한 미달일 수도 있다.

音樂學校의 基本構想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構造를 도표⁵⁾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註5) Hans- Joachim Vetter / Diethard Wucher, Grundkonzeption einer Musikschule, in : Handbuch des Musikschulunterrichts, p. 115, 이하 참고문헌참조.

2. 敎育課程⁶⁾

1) 基礎課程

음악학교의 기초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2개의 수업형태가 양자택일로 주어져 4~6세 어린이를 위한 早期音樂敎育과 6~8세 어린이를 위한 음악적인 기초기능敎育으로 나뉜다.

① 예비반 : 조기음악敎育 (4~6세)

音樂學校의 早期敎育은 특별한 敎育적이며, 조직적인 전제가 요구되므로 授業은 어린이들의 音樂的인 可能性을 높이방법을 통하여 계발시키고, 才能의 方向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며 기악연주에 요구되는 基本能力을 伸張시키도록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早期敎育課程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授業體系가 필요하다. 授業은 1주일에 1회 대개 60~75분)이며 한 학급의 정원은 12명이다.

② 기초반 : 기초음악敎育 (6~8세)

기초敎育은 어린이들의 음악적인 능력을 계발시키며, 재능의 방향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기악연주에 필요한 기초를 닦아준다. 기초敎育과정은 자체적으로 독립된 수업체계를 가지며 수업은 주당 2시간이며 정원은 15명이다.

기악수업은 이 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다.

2) 初級課程 (9~13세 또는 6~11세)

初級課程에서는 전공선택에 따라서 器樂專攻과 聲樂專攻으로 나누어 출발하며, 수업형태는 集團授業과 個別授業으로 이 두가지 수업형태의 교환이 가능하다. 보충과목은 학급단위나 분단으로 나누어 수업을 받으며 수업은 주당 전공과목 1시간, 보충과목(음악통론, 가창시간, 기악시간, 리듬기법) 1시간이다. 대개 수업연한은 4년이 걸린다.

3) 中級課程 (13~17세 또는 11~15세)

중급과정으로 진급하는데는 원칙적으로 中間試驗이 따르며 새로 음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심사를 거쳐야 한다.

專攻科目의 授業은 個別指導를 원칙으로하며 보충과목은 학급이나 분단수업으로 한다. 보충과목(기악중주, 초보관현악, 가창, 중창, 실내악, 음악통론, 시창청음, 리듬기법)은 음악학교의 필수과목이므로 누구나 이수해야 한다. 수업시간은 전공과목 1시간, 보충과목은 1~2시간이며 수업연한은 대개 4년이다.

4) 高級課程 (17~15세와 成人)

中級課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 中間試驗이 따르며 新人生은 심사를 받아야 한다. 專攻科目과 보충과목(기악중주, 관현악, 합창, 실내악, 그와 대등한 분단연습)의 授

註6) 참조 : Strukturplan für Musikschulen, Verband deutscher Musikschulen. e. V. ;

재인용 : Hans- Joachim Vetter/Diethard Wucher, 前掲書, p. 116

業은 中級課程과 同一하다. 수업 연 한은 제한없이 學生의 能力에 따라 결정된다.

5) 初級一, 中級一, 高級課程의 科目

① 專攻科目

a. 器樂專攻科目

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 - 콘트라바스 - 감베 / 피델 - 플룻 - 오보에 - 클라리넷 -
파곳 - 리코더 - 색스폰 - 호른 - 트럼 - 트롬본 - 튜바 - 피아노 - 오르겔 - 기타
아 - 만돌린 - 피터 - 아코디온 - 타악기

b. 聲樂專攻科目

가창반 - 독창

② 重奏와 補充科目

기초감상교육 - 중창 - 합창 - 기악합주 - 음악과율동 - 관현악 - 실내악 - 음악통론 -
리듬기법 - 시창 · 청음 등등

3. 各 課程의 目標

音樂學校의 役割이 갖는 근본적인 特性은 일반음악교육과 특수기악교육의 실기와 이론에 대한 補助이다.

기본적으로 音樂學校의 學生은 우선 ‘早期音樂教育’과 ‘基礎音樂教育’의 基礎課程을 마쳐야 하며, 기초과정을 마친 후 學生은 器樂을 할것인지 聲樂을 할것인지를 결정한다.

基礎課程에서 音樂實技외에 理論的인 知識과 能力은 기악전공이나 성악전공과목과 함께 보충과목인 ‘기초시창 · 청음교육’을 통하여 심화되고 계발시킨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기악수업 개시전에 음악수업에 대한 축소된 특별한 예비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예컨대 ‘타악기를 통한 기초기악교육’ 코스의 형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器樂敎授案은 학생이 기초과정수업에 요구되는 기초실력을 갖추었다는 전제아래 출발한다. 그후에 따르는 상급과정은 학생의 우수한 재능과 근면 그리고 지속적인 연습이라는 전제로서 성패가 달려 있으며, 각 과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대략 2 년안에 교수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다.

基礎課程의 目標은 일반적인 기초음악교육의 실행과 계발이다. 이는 감성화, 음악화, 창작, 사회화라는 4 가지 기본이념에서 그 意義를 찾아볼 수 있다. 그밖에 기초과정은 진전되는 기악수업에 대한 기초를 닦아주는 예비교육을 한다.

初級課程의 目標은 개개 樂器에 대한 연주기법적인 기본을 마련해주며 음악통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음감훈련을 시키는 일이다.

中級課程의 目標은 연주기법의 확충과 특수한 창작력의 계발이다. 중급과정의 수료는 약 8 년간의 전공수업을 받은 후 일정한 능력수준에 따라 인정된다. 즉, 高級課程으로 진급

하거나, 음악적인 직업교육으로 진급되는데 이 두 경우 모두 성적의 수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직업교육의 준비로서 일련의 음악학교에서는 事前職業的인 專門教育을 실시 하고 있다.

高級課程은 특별한 경우에만 도달할 수 있으며 履修할 수 있으므로 음악대학의 전공에서 요구되는 기악능력과 예술성과 비교되며, 학생은 계속되는 음악활동을 위한 우수한 재능과 수준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Ⅲ. 國民音樂學校의 教員養成制度

1. 머리말 : 職業觀

音樂教育은 20 세기에 들어서부터 學校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져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그 體系와 內容은 물론 敎授法등이 매우 다양해졌다.

19 세기부터 독일에서는 市民文化의 發達과 音樂의 育成을 통하여 學校밖에서의 즉, 社會音樂教育이 확산되었다. 예컨대, 전통적인 콘저와토리움에 의한 學校音樂敎育과 더불어 個人敎習音樂敎授가 점차적으로 강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음악육성에 따른 음악교육의 의미는 새로이 형성된 敎員職의 예술적이며 敎育적인 資質의 育成과는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그중에는 수차례에 걸쳐 音樂敎師의 敎育적인 육성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어 새로 발족된 專門職聯合會에 의하여 이러한 방향의 발전이 모색되었다. 이것이 전통적인 음악교육과 敎員養成에 대한 20 세기초의 결정적인 개혁의 척도가 되어 전문적인 입장의 근거가 주어진 것이다.

주어진 여건속에서 스스로 변천하는 지역사회에 상응하여 발전된 새로운 음악교수법과 敎員養成제도의 개혁으로서 20 세기초 독일에서는 靑少年과 市民을 위한 音樂學校를 設立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音樂敎師에 대한 職業觀이 확립되고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職業意識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專門職에 대한 職業觀의 확립은 文化育成과 音樂敎育의 育成이라는 새로운 과제와 社會의 完成을 향한 지속적인 변화속에서 자리를 굳히고 하나의 특징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다음의 첫 章에서는 音樂敎師養成에 대한 歷史的인 根據와 發展方向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하며, 그다음에 音樂敎師敎育의 敎育課程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2. 敎員養成制度의 歷史的 變遷

1) 1945 년의 케스텐베르크改革

傳統을 바탕으로한 획기적인 進歩,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미 기존해 있는 敎師들

에 의한 20 세기의 音樂教育에 대한 進步는 1920 년대의 케스텐베르크의 改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一般學校의 音樂授業을 위한 敎員養成規定과 授業의 方向設定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로 個人敎習音樂敎員 資格試驗과 養成制度 및 養成機關의 개념에 대한 規定이 공포되었다.

먼저 프로이센에서 個人敎習音樂敎員 資格試驗이 공포되고 그후, 1930 년대에 들어 와서 전 독일내에서 개인교습허가를 위한 前提條件이 되었다.

각처에 敎員養成所가 설립되고 처음에는 교육학과목, 이론과목, 학술적인 과목으로 구성된 2年課程이 설치되었으나 나중에는 3年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양상과는 별개로 個人敎習音樂敎員試驗의 資格을 얻기 위한 多年間의 專攻課程이 設定되었다. 이 敎育課程은 추후에 첨가된 아코디온·리코더·기타아를 제외한 모든 樂器로 구성되었으며 리듬교육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밖에 보충과목으로서 작곡법·악식론·감상법·지휘·음악학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은 전공과정을 설치한 대표적인 養成所는 레오(Maria Leo)가 설립하고 당시의 우수한 젊은 음악교육자들이 강사진(M. th, Schmücker, H. Mersmann, G. Waldmann)으로서 敎育課程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향후 10여년간의 교원양성과 육활동의 기초를 다진 베를린의 양성소이다.

위의 養成課程을 마치면 敎生實習과 個人敎習音樂敎員을 위한 國家考查가 專攻과 副專攻으로 나누어 필기시험이 있다. 그후에 각기 신청에 따라서 교습허가를 발부하게 되는데 이것으로서 專門職業의 從事에 대한 최종적인 認可를 받게 된다.”

2) 1945 년까지의 敎員養成制度

1905 년 아우그스부르크에서 그라이너(Albert Greiner)에 의하여 독일 최초의 歌唱學校(Sing Schule)가 設立되고 연이어 歌唱學校敎員養成所가 創設되었다. 이로써 남부독일지역에 거국적인 音樂教育의 基礎가 확립되었으며, 밀집된 歌唱學校網을 통하여 지난 10여년간 표면에 점차적으로 대두되었던 國民音樂學校로 보완되어 확산되기 시작했다.

1918 년 전쟁이 끝나자 곧 靑少年運動의 礎石으로서靑少年音樂運動(Jugendmusikbewegung)이 예테(Jöde)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모든 國民의 文化生活에 參與’라는 모토아래 특히 音樂에 參與에서 청소년과 국민을 위한 포괄적인 음악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民衆音樂敎育論을 부르짖었다. 케스텐베르크가 민중음악교육론의 理念과 未來志向性을 인식시켰다면 예테는 교회음악과 학교음악을 위한 아카데미에 1923 년 베를린에서 아카데미 설립신청과 더불어 시범학교를 세우고 이를 위한 敎員養成課를 설치하여 현실적인 발판을 다져 놓은 것이다. 이것이 靑少年音樂學校의 발단이 되었으며 그후 국제적으로 판

註7) 그러나 이 制度는 1945 년 이후 軍事政府에 의해 중지되었다.

목할 만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더욱 발전되어 현대의 독일 민중음악교육의 진흥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양성될 敎員들에게는 민족음악육성·집단수업·합주·민속악기(리코더, 기타아)와의 연결 등의 새로운 任務가 주어졌다.

1925년에 개설된 敎員養成課程은 1년 과정으로 새로운 音樂學校의 社會文化的인 任務를 띠고 실행되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양성과정의 강의내용외에도 성악과 기악합주가 敎科로 포함되었으며 아카데미의 자체적인 졸업시험으로 되었다. 1930년에 하나의 고정된 양성과정으로 설치되었다.

1933 ~ 1945년 사이에 이 양성과정은 靑少年과 國民을 위한 音樂學校로서 1937년부터 베를린외에도 바이마르의 音樂大學(Musikhochschule)에서 강력히 추진되었으며 1938년에는 그라츠의 音樂大學에서도 추진되었다. 그러나 1945년에 이르러 이러한 움직임은 잠정적인 종식을 고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3년에 첫 발을 디딘 발전의 첫 걸음을 파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時代를 향한 변화된 主張으로서 계속 추진해 가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남용되었던 靑少年音樂學校의 理念은 그들 본연으로 되돌려져 새롭게 正義되고 實現되어야만 했다.

3) 1945년 이후의 修正

1945년 이후의 새로운 시도는 모든 면에서 폐허위에서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그 당시 독일은 점령국의 통치 아래 강제통일국가로서의 형태를 취한 연방국가로서 文化的 理想을 뒤로하고 새로운 體系의 文化統治權에서 분리되어 지금까지도 東·西獨이 공동으로 갈 수 있는 발전경향에 저해를 받게 된 것이다.

독일 音樂大學의 敎員養成敎育은 케스텐베르크의 傳統과 연관을 맺고 있었다. 비록養成規定이나 資格試驗規定이 연방주에 따라 다르고 부분별 修正이 가해졌지만 그 基本理念은 現在까지도 변함이 없다. 修正된 部分을 보면 첨가된 樂器로서 리코더와 기타아 그리고 나중에는 아코디온이 교과과정에 편성되었으며, 靑少年音樂과 民族音樂이 몇몇 연방주에서 추가로 교과목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內容이나 敎授形態는 단지 미진한 상태로 음악대학의 교육과정에 수용되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처음에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靑少年音樂學校가 매우 점진적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되었으며 또한,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무런 意味를 갖지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데에 의해 설정되었던 敎育課程은 일단 망각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器樂敎員의 養成은 케스텐베르크가 남긴 기초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4) 최초의 새로운 試圖

지난 1920년도에 音樂學校의 發展의 向方은 敎員養成機關이나 文化行政機關 모두 예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데의 敎育理念에 기초를 두고 기존의 敎員養成敎育이 보완되고 청소년음악학교의 특수한 교과내용을 소개하면서 敎員을 양성해 나갔다. 이렇게 하여 1950

년대 전반에 靑少年音樂과 民族音樂을 위한 研究機關이 設立되었다. 1949 년에 쾰른음악대학에, 1953 년에 트로셴겐대학연구소에, 1956 년에는 하노버에, 1959 년에는 뮌스터에서 각각 설립되어 새로운 정선된 敎育機關形態로 發展시켜나갔으며, 1961 년에는 폴크방 음악대학이 에센에서 청소년음악과 민족음악을 위한 교과목을 설정했다. 앞에서 언급된 5 개의 研究所에서 여러 가지 敎授方法이 시도되고 발전되어 基礎音樂敎育·敎授法·方法論 등의 새로운 敎授形態가 소개되었다. 그리고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거나 제한을 두었으며 일부는 심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발단이 音樂敎師敎育과 資格試驗制度에 대한 새로운 思考와 改革을 고무할 수 있었다.

音樂學校의 發展은 위와 같은 노력과 함께 독일음악학교협회를 통하여 1960 년대에는 새로운 敎育案이 추진되고 한편으로는 초기의 교육과정에 청소년음악과 민족음악이 편성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교과에 대한 종합평가하여 활동원칙과 그 내용을 관철시켜 나갈 것을 추구하면서 금세기 후반에서 改革案을 위한 時代로 도래하게 하였다.

5) 새로운 方向

1966 년 두 가지 발단이 그 序頭를 장식했다. 그 첫째로 독일음악학교협회 회원중 지도층이 2 년에 걸친 작업끝에 音樂敎員을 위한 養成案을 전통적인 교원양성안과 청소년음악 교육 그리고 민족음악교육의 2 가지 방향을 연합하여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일반학교 밖에서의 음악수업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분명하게 나타내주었다. 또한 음악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였으며 音樂學校의 다양한 任務는 2 개의 分科로 윤곽을 드러나게 하였다. 즉, 공통기초과정외에 전통적인 기악교원교육과정과 기악초급과정을 위한 교수능력을 포함한 기초과정을 위한 敎員敎育課程이 편성된 것이다.

그리고 독일음악학교협회의 위와 같은 노력과는 무관하게 뒤셀도르프에서 제 2 의 단체가 결성되어 R. 슈우만콘저와토리움에서 그와 유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특수한 교원양성 교육안을 추진하였다. 이는 두 단체가 장기간동안 그들의 작업성과를 서로 교환하고 그들의 생각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치한데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포괄적인 영역에 대하여 논쟁하고 가능한한 敎育改革을 해야한다는 案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최고주무기관으로서 독일음악학교협의회가 결성되고 연이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위에서 언급된 두 단체외에도 음악학교, 콘저와토리움, 학교음악교육자회, 독일음악교육자협회, 연주예술가협회의 代表들이 專門職連合으로서 참여하였다.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많은 조언과 토론을 거쳐서 1971 년 敎育課程과 試驗制度가 마련되었는데 여기에는 독일음악학교협회와 슈우만콘저와토리움에 의한 기본적인 구상을 받아들이면서 절충을 해야만 했다. 이 敎育案은 이로써 가능해진 改革을 단행하기 위하여 1972 년 文敎部에 題出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실현되지 못했다.

6) 改 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음악협회의 제안과 독일국민음악학교협회의 지속적

인 진출은 교사교육의 교수내용 및 모든 면에서의 확대를 가져와 각 연방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하나의 작은 改革의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시험제도에 대한 초안이 문교부와 음악대학에 의해 자체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한편 실제로는 교육과정에 일부는 반영시키고 있었다. 그리하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문교부에 의한 수년간의 준비작업끝에 1966년에 專門團體들에 의하여 독일음협회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試驗制度가 실시되게 되었다. 이로써 1970년대의 音樂教育의 方向을 최종적으로 확고히 해준 모든 改善과 試驗制度의 改革을 위한 基礎가 다져진 것이다.

그밖에도 1979년초에 니-더작센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칙아래 성립된 새로운 시험제도가 확정되었으며 다른 연방주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7) 特別 補助措置

國民音樂學校을 위한 이와 같은 긍정적인 措置는 미소하지만 긴급한 보조조치였다.

실제로 이와 같은 改革의 實行은 현장의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며, 早期教育和 基礎教育의 初級課程과 合奏科目과 補充科目에서 요구되고 있었으나 教育機關에서는 다만 보조조치만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독일음협에서는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교육내용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정에 새로이 편성된 교과를 위한 교사를 위하여 보충 개편하였으며 졸업시험으로서 그 과정을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음악학교에서 문제가 되었던 상황들이 최소한으로 완화된 것이다.

3. 教師教育⁷⁾

1) 일반적인 概觀과 基本構想

지난 100년간의 一般學校밖에서의 독일의 社會音樂教育을 개관해보면 우선 이 分野의 成長과 그에 따르는 形式과 內容이 擴大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音樂教師의 役割에 대한 定意를 연역해 볼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18세기에 당시의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최초로 시행되었던 器樂學校의 教科目を 알 수 있다.⁹⁾ 당시의 器樂教育에서는 實伎演奏者에 의하여 教授法的인 方向이 정해졌으며, 教師는 여러 教科를 가르칠 能力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① 教師는 특수한 전공과목에서 기술적인 능력을 전수하며 학생들에게 해석적이며 미학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② 이러한 수업에서는 이론적인 지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학생들에게 음악통론, 시창

註8) 참조 : Haris-Joachim Vetter, Musikschullehrer- Ausbildung, in: Handbuch d. Musikschulunterrichts, Gustav Bosse Verlag, Regensburg, 1979, p. 381 ff.

9) J. J. Quantz와 L. Mozart의 기악연주기법에 대한 교재와 더불어 C. ph. E. Bach의 '피아노 연주법 시도' (Versuch über die wahre Art das Clavier zu spielen ...)은 1750년대의 통주저음법과 피아노연주 그리고 음악연주일반에 대한 주요한 문헌으로 꼽히고 있다.

청음, 형식론, 악기론,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적인 지식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위의 사항을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音樂敎員養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① 개개 전공과목은 동시에 예술적이며 교육적인 요구를 내포하고 있다.
- ②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은 이론과목에서 갖추어야 한다.
- ③ 교육학적이며 교수법적인 지식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구는 금세기에 들어와 후면에 부각되어 케스텐베르크改革의 敎育內容의 土臺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50 년간의 現實은 유감스럽게도 매우 불완전해 보이고 있다.

① 일반학교이외의 音樂敎員(社會音樂敎育擔當者)의 음악교육적이며 예술적인 임무는 대규모 교육기관에서 그에 관계되는 피교육자에 이르기까지 널리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社會音樂敎育을 위한 敎員養成敎育은 예능전공교사뿐만 아니라 學生들로부터도 전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능교육에 대한 필요악으로서 또는 피할 수 없는 부수적인 계도로 받아들여 지거나, 소수의 음악대학에서는 '小敎育學'으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면으로는 대학생으로서 사회음악교육전공자는 흔히 예술가적인 행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부차적인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있었다.

② 이미 피려한 바와 같이 音樂學校에서의 音樂授業의 形態는 현재까지도 광범위한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敎育內容의 多樣性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2) 전통적인 敎師敎育

1925년 케스텐베르크改革으로 처음으로 音樂敎員 養成課程에 기본적으로 교육학과목이 편성되었다. 20년대와 30년대의 청소년음악과 민족음악영역의 교사양성과정은 2차세계대전 이후에 청소년음악과 민족음악을 위한 研究所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 2가지 교육과정 형태를 간략하게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통적인 연구소교육 - 처음에는 2년이었다가 나중에 3년과정으로 다음 과목들이 이수되었다.

a. 기악전공과목 : 연구소 입학에서 3년후의 졸업시험에 합격을 예견할 수 있을만한 능력에 도달해야 한다.

b. 이론과목 : 음악통론, 작곡법, 시창청음, 악식론, 음악사

c. 교육학과목 : 음악교육학, 교육심리학, 실기교육학, 특수음악교육학, 전공과목을 위한 교수법과 방법론

② 청소년음악과 민족음악교육과정 : 여기서는 위에 열거된 과목외에 다음 과목이 포함되었다.

a. 가창과 발성

b. 합창지도와 합주지도

c. 집단수업 방법론

a. 기초음악교육 교수법

e. 청소년음악학교의 목표와 임무에 대한 개론

위의 두가지 교육과정의 형식 및 내용의 정선이나 종합은 학생들의 과다 과목이수 때문에 다만 아주 국한된 범위에서 가능했고 또한, 학생들로부터 자주 심한 방향충돌을 야기시켰다. 점점 더 이 두교육과정의 연결은 대학교육과정으로서 유지될 수 없었으며, 배우는개개 학생들의 흥미나 재능정도를 가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에서 보충과목으로서 ‘청소년음악과 민족음악에 대한 개론’이 교수된 것처럼 교육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音樂學校의 역할의 중요성이 제 2 차대전 이후 부각된 것처럼, 이 문제를 위한 현실적이며 아울러 현대적인 해결은 오로지 두 교육과정에 공통의 기초교육과정을 두고 교과목을 여과하여 현실적인 실행을 하는 것이다.

3) 1960 년대의 教育課程과 資格試驗制度의 改革

앞에서 피력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60 년대 후반에서 70 년대 초반에 무르익어갔다. 여러 단체들의 준비활동이 진척되었으며, 그중 대표적인 독일음악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 준비작업에 대하여 이미 서술된 바 있다. 먼저 이러한 준비작업에서 일련의 기본적인 문제로써 양쪽 교육과정의 분과쪽으로 발전해나갔다. 예컨대, 두개 분과의 기본적인 경계, 여러 전공과목의 교육학적이며 예술적인 말은 바 영역의 다양성, 많은 이론과목·교직과목·수업실제에 관한 과목의 병합과 그 비중, 공통기초과정에서 종합적인 교육영역의 편성과 2 학년과정과 3 학년과정동안의 양쪽 교육과정의 분과편성, 양쪽 교육과정단위의 대등한 설정등이 검토되었다.

독일음악협회의 전문위원회의 작업성과는 ‘음악학교교사와 개별지도음악교사를 위한 교육제도와 자격시험제도’로서 1972 년 6 월에 독일음악협회에 제출되어 아래의 기구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국립음악대학장실무위원회, 음악아카데미, 음악대학연구소, 음악콘저바토리오의 실무위원회, 음악교육연구소실무위원회, 독일음악교육자와 연주예술가협회

그밖에도 1972 년 10 월에 문교부회의에서 50 년대의 시험제도의 골격을 폐지하고 새로운 시험제도의 초안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노르트라인 - 베스팔렌에서 1976 년 10 월에 새로운 시험제도가 제정됨으로써 진일보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독일음악협회의 제안을 기초로하여 의견상으로도 음협의 초안과 동일한 제목으로 공포되었다.

4) Nordrhein - Westfalen 의 새로운 試驗制度

종래의 교육형태에 맞추어 교원양성과정의 수학년한은 계속해서 3 년으로 제한되었으나 4 년으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독일전역에서 일어나고 그동안에 니더작센에서 제일 먼저 실현되었다. 1 년의 연장과정은 3 년의 기본과정을 마친후에 연이어 이수할 수 있다.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에서 제정된 새로운 시험제도에서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이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 그리고 새로이 설정된 교육실습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습자격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 전공에 따라 주어졌다.

① 敎科課程과 專攻科目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의 시험제도의 규정에 의하면 4 가지 전공과정으로 다음과 같다.

a. 기악교육학과 성악교육과정은 전공과목으로서 첼현악기, 타현악기, 관악기, 전반악기, 타악기, 아코디온, 성악으로 구성되어 기본이념으로 교사는 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전 교과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학해야 한다. 이는 또한 고도의 특수한 기능적이며 예술적인 능력의 소유를 의미한다. 그밖에 교사는 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실내악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음악학교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 일반음악교육

이 과정은 1 개 악기전공과목과 조기음악교육, 기초음악교육, 합주지도, 즉흥연주과목의 2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기본이념으로 여기서 양성된 교사는 초급단계 수업을 맡게 되며 자격은 시험합격후에 부여된다. 그리고 1 개 악기전공외에 위에 언급된 4 개 교과중 하나를 심화하여야 하는데 즉흥연주과목이 초급단계 수업을 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밖에 질적으로 우수한 초보기악수업(초급단계, 경우에 따라서 중급단계)에 참여하여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추천되며 실제적으로 민첩성과 다양성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이와 같은 교사형의 기악교육에서는 최소한의 악기지도능력과 예술적인 질이 요구된다. 교과영역으로 보아 교육학적인 확고함과 다양성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 과정을 전공한 사람의 대다수가 음악학교에서 거의 70 %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c. 리듬론

이 교과과정은 율동기법과 율동론, 음악과 율동속의 즉흥연주, 음악과 율동을 통한 창작 세 부분 영역으로 나뉜다. 음악학교의 전공과목과 보충과목으로서 '리듬교육과 음악교육'의 추후의 활동을 볼 때, 율동전공자는 음악학교의 조기음악교육과 기초교육과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즉흥연주와 같은 기초음악교육에 대한 심화를 필요로 한다.

d. 작곡법과 청각교육

이 전공과정은 일반음악교육전공과정과 같이 1 개 악기의 초급수업을 위한 자격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전문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 음악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교육과정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② 副專攻科目 (필수과목 · 보충과목)

시험규정 § 4에 필수과목과 보충과목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다. 응시자는 필수과목에서 제 2 악기나 성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한 능력에 도달해야 한다. 보충과목은 한 교과를

다음 중에서 선택하며 졸업성적으로 증명된다.

a. 음악이론과 음악학 : 음악통론, 작곡법, 청각교육, 작품분석, 악식론, 음악사, 음악향학, 악기론, 관현악법

b. 교육학과목 : 교육학과 음악교육학개론, 개개 전공과목의 지도법, 교육심리학,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c. 음악실기과목 : 합창, 관현악

d. 기타 특수교육과목

실내악 (기악과 성악전공과정) 타악기연주, 리듬론, 언어교육, 발성론, 악기연주론, 편곡 (일반음악교육전공과정) 타악기연주, 언어교육, 발성론, 해부학, 심리학원리 (리듬론전공과정), 작곡기법, 음악감상법, 관현악연주, 통주저음연주, 분석 (작곡 또는 청각교육전공과정)

위의 과목이수는 원칙적으로 성적증명서에 의해 인정된다. 이 교과목은 3영역으로 구성된다.

기악필수과목

공통기본과목

교육과정특수과목

이 모든 교과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응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직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교육을 보장해야만했으며, 이미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고조되는 音樂學校의 意味와 다양한 授業形態를 비추어볼 때, 教師養成教育의 심화와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③ 授業實習

수업실습에 대한 조항은 시험규정 § 4 (4)에 들어 있다. ‘시험응시자는 전공과목에 따라 1년간 1명의 師傅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 실습은 최소한 주당 2시간으로 구성된다.’

음악위원회의 초안에서는 이와 같은 실습은 본래의 교육과정과 연결되어 실시되어야 하며 졸업시험은 예술적·이론적·음악교육학적인 시험과 수업실습시험 (법관연수제도와 유사) 두부분으로 시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적 조직적인 어려움을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 文敎部에서 간파하고 최종학기에 축소된 형식으로 실습을 받도록 하였다.

④ 研修試驗

§ 26 시험규정에 따라 음악교사 자격시험 합격자와 개인교습교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전공과목이나 그밖의 교과과정의 연수시험을 볼 수 있다. 이 연수시험에는 합창교육과 관현악교육 그리고 음악사 등의 보충과목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보충된 전공과목의 시험은 일반적으로 4학기의 수학을 요한다. 이 연수교육과정은 장차 대규모 음악학교의 교장이 되

고자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보장을 해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⑤ 卒業試驗

이상으로 앞에서 피력한 교육제도에 대한 개관을 해보기 위하여 졸업시험제도의 새로운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졸업시험은 다음 4 부분으로 구성된다.

- a. 과제 (논술)
- b. 예술적시험
- c. 시범수업
- d. 구술시험

과제는 나머지 부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전에 최종학기 전년도에 10주내에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예술적시험은 시험계획에 따라 시행되며 2회에 걸쳐 시범수업은 30분씩 속행되고 연이어 15분간 구술시험이 있다. 이 구술시험에서는 응시자의 전공교육과정의 영역에서 한 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구술할 기회를 주며 앞에서 이미 선행된 시험내용에 대하여 질문한다.

모든 부전공과목은 졸업성적으로 인정되며 이 졸업시험제도에서는 전공과목에 치중하여 시험응시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장래의 전공과목에 대한 교수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IV. 맺 음 말

독일의 전통적인 音樂文化 向上的 基盤을 구축하는데는 一般學校에서의 學校音樂教育은 물론, 특히 民衆을 위한 社會音樂教育이 일찍부터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학교음악교육과 상호보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育成되어온 것이 큰 공헌을 하였다.

1925년경부터 독일에서는 民衆音樂教育이 靑少年音樂教育과 더불어 대두되어 여러 지방과 도시에 민중을 위한 音樂敎習所가 설치되어 이것이 오늘의 社會音樂敎育機關인 國民音樂學校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30년경 문교부의 훈령으로 공직에 있는 音樂敎師의 學校 및 私宅에서의 器樂敎授가 禁止된 이후로 기악교수는 주로 학교밖에서 개인지도나 음악학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社會音樂敎育의 制度的 變遷의 개요를 國民音樂學校 制度와 敎員養成制度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조명하여 봄으로써, 아직도 우리 나라의 社會音樂敎育이 많은 현실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비추어, 문제점 및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社會音樂敎育의 技能은 專門音樂人의 養成과 폭넓은 音樂生活을 할 수 있는 平生敎育의

育成이며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학교이후부터 입시위주의 교육사조로 學校音樂教育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으므로 더욱 그 役割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관인음악학원이나 사설강습소가 사회음악교육기관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社會音樂教育育成策이 마련되어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관계당국과 음악학원 연합회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관계당국의 제도적 보완조치로서 음악학원강사의 자격증제도를 강화하고 강사들의 수준별로 급수를 부여하는 규정을 설치하여야 하겠으며 그러기 위하여는 大學에서의 사회음악교육자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악교육담당기관에서는 당국의 정책시행에 적극 호응하여 음악학원의 환경과 시설 개선, 교육내용의 통일, 단순한 기능연마에만 치중하는 현재의 교육방법을 탈피하여 이론적인 교육의 병행, 그에 따르는 집단수업의 필요성 등의 제 문제를 해결하여 법적인 지위의 보장은 물론 사회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여 하루속히 차원높은 음악교육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류덕희, 世界音樂教育史, 학문사, 1985.

世光音樂出版社, 音樂教育 1986년 7월호.

Deutscher Musikrat, Schulische und ausserschulische,

Musikpaedagogik und Musikpflege, in : Deutscher

Musikrat, Referate und Information, Heft 32, 1976. 7.

Erpf, Hermann, Neue Wege der Musikerziehung, Stuttgart, 1953.

Grundlach, Will, Musikschule und Allgemeinbildete Schule - ein

Betrag zur Diskussion zwischen den Institutionen, in : Die

Musikschule Bd. 1, hrsg W. Muller - Bech u. W. Stumme, Mainz. 1973.

Hoehnen, Heinz W., Schule und Musikschule in ihren Ergaenzungsfunkt-

ionen, in : Die Musikschule Bd. 111, Mainz, 1974.

Stein, Werner, Kulturfahrplan, Berlin, 1964.

Twittenhoff, W., Neue Musikschule, Mainz, 1951.

Wucher, Diethard, usw (hrsg), Handbuch des Musikschulunterrichts,

Regensburg, 1979.

Zusammenfassung

„Anmerkungen zum System der Sozialmusikerziehung und Musikschullehrer – Ausbild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Cho, Hio-Ihm

(Assistentprofessorin, Seoul
National Teachers College)

In diesem Beitrag wurde Entwicklung, Organisation, Arbeitsweise und Inhalte der Sozialmusikerziehung und Musikschullehrer – Ausbild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handelt. Dabei wurde versucht, unsere Situation und Aspekte der sozialen Musikerziehungsanstalt aufzuzeigen, im Vergleich m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eitdem der Begriff 'die lebenslangige Erziehung' im modernen Leben auftrat, nahm die soziale Erziehungsanstalt mehr Bedeutung. Im Bereich der Musikerziehung haben sie in den letzten Jahrzehnten zweifellos viel geleistet.

Musikunterricht findet in Deutschland seit Jahrhunderten statt innerhalb und ausserhalb der Schule. Als eine wertvolle Ergänzung der Musikerziehung in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 bietet der Gruppenunterricht der städtischen Jugendmusikschulen, in denen Kestenbergs Idee der » Volksmusikschulen « Gestalt gewann und die heute als moderne soziale Einrichtung neben den bewährten konservatorien bestehen.

Die Grundkonzeption der Musikschul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t ihr pädagogisch-organisatorisches Gerüst in einem Strukturplan erhalten, der 1961 entworfen, zunächst in Nordrhein – Westfalen erprobt und 1969 durch die Mitgliederversammlung von den dem Verband deutscher Musikschulen angeschlossenen Musikschulen als verbindlich erklärt wurde.

Die Erwartung an sozialen Bildungseinrichtungen sind weit gespannt und vielfältiger Art:

- Kulturpädagogisches Dienstleistungsangebot
- Belebung bzw. Intensivierung des musikalischen Kulturlebens.
- Erhöhung des Freizeitwertes

Das bedeutet, daß unter anderem Impulse für die Bereiche Kultur, Erziehung, aber auch für Politik und Wissenschaft erwartet werden, ferner die Mitwirkung bei der Gestaltung urbanen Charakters des Ortes und eine Belebung des Gemeindelebens überhaupt.